

「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17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환경과장)

-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- 주변지역의 지정 (안 제3조)
 -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(읍·면)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 지역을 결정·고시하여야 한다.
- 군수의 책무 (안 제4조)
 -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, 주민·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주변지역 지원 (안 제6조)
 -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
 - 자원화시설 설치지역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·고시하도록 하였고
 -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 - 다만, 주변지역 지정과 지원사업 범위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,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